

「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23일 장문혁의원이 발의하고, 2021년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1. 제안이유

기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 중 거주기한 2년을 1년으로 변경(안 제3조제1항)

나. 지원대상 중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를 부 또는 모로 변경(안 제3조제1항)

다.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외 이혼을 추가함(안 제3조제2항)

라. 지원신청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변경(안 제5조제3항)

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기존 「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」의 지원금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조례안 주요내용으로

안 제3조제1항에서는

지원대상의 요건 중 하나인 거주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,
신생아와 함께 부모 모두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요건을
부 또는 모로 변경

안 제3조제2항에서는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는

부모가 사망한 경우 외 이혼을 추가

안 제5조제3항에서는 지원신청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
변경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○ 기존 조례 상 2년의 거주기간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때 길게
규정되어 있으며, 부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는 부
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, 한부모가족의 경우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
있는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
본 조례안의 개정취지가 있습니다.

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 참고자료(관계법령)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